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1

(2015. 5. 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4월 28일(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월)

4.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 동(同)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 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변경(안 제1조)
- 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구성원 및 임기 변경(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검토의견]

- 동(同)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15.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공시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종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을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회 구성원 및 임기를 변경하여
 - 1) 현행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 2) 부위원장을 기획경제국장에서 당연직 기획경제국장, 감사담당관, 재무과장으로 하고
 - 3)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을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개정하고
- 민간 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임기는 현행 2년, 연임 가능 => 3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 함

구분	현행	개정안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기획경제국장 •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 기획경제국장, 감사담당관, 재무과장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위촉직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연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안 제2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저촉됨이 없고, 2015.3.12.~ 4.1.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그 동안 정비되지 않은 부정확한 용어 및 문구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 동(同)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3명)을 기획경제국장, 감사담당관, 재무과장으로 명확하게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에서 3년, 한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는 제외하여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로 하여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였으며,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을 못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종전의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어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심의 대상별 성격에 따라 상반기 예산안과 하반기 결산 등을 동(同)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규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자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